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량선성 내무청과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청 간의 한국으로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량선성 내무청(아래에서는 공동으로 “양측”이라고 칭하며 각각으로 “A측”과 “B측”이라고 칭한다) 간의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체결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및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 (아래에 “해남군”이라고 칭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량선성 내무청 (아래에 “량선성”이라고 칭한다)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A국가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의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양측의 책임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 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건강검진, 행정비용 등 필수비용만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2.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3.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 양측은 근로자에게 행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상세 내역과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해남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해남군은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재입국 추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4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량선성 내무청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해남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해남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베트남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여행자보험,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마. 해남군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량선성 내무청 및 해남군 간의 본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1. 량선성 내무청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량선성이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된다.
 2.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3.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해남군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자.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한다.
-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 카. 해남군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 타.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에 대해 해남군이 재입국 추천, 계절근로 재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량선성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양해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예외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양해각서는 2026년 4월 9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 및 2026년 3월 31일 베트남 량선성 내무청에서 체결되며, 한국어, 베트남어와 영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의 대표자
권한대령

부근수 *부근수*
해남군수 명현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량선성 내무청의 대표자


Hoang Thi Hien
Hoang Thi Hien
청장

붙임: 부속합의서 1부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해남군

-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주관부서: 해남군청 농정과, 해양수산과
- 연락처: 061-530-5076, 팩스/이메일: 061-530-5584

나. 랑선성 내무청

- 주소: 랑선성, 루옹반찌구, 팡쭙가 4호
- 주관부서: 노동, 고용, 사회 보험
- 연락처: +84 2053812110, 팩스/이메일: sonoivulangson.gov@gmail.com

※ 외국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시 반드시 인력송출 특정 지자체를 명시

2. 선발 대상 및 기준

-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랑선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50세 이하의 남, 여
- 다. 직업: 농업/어업 종사자 (근로자별 농업/어업 종사 입증서류 제출)
-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 마. 제외대상: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본국 출국 후부터 귀국할 때 까지의 해당 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 베트남에서 직접 주관하는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필수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 가. 송출인원: 연간 약 000명(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해남군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E-8 비자)로 한다.
-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총 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시급
 -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된다.
 - 근로자와 농장주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경우에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7~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부여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해당 비용을 정산 후 출국한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입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해남군과 랑선성 내무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 이동은 해남군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국 후 근로개시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 근로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 베트남대사관, 해남군, 랑선성 내무청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해남군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해남군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한다.(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귀국 비용이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게 되며, 법적 규정에 따라 해남군과 랑선성 내무청은 근로자에게 지원비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 나. 해남군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군의 대표자
권한대행

복권

명현관

해남군수 명현관



2026. 4. 9.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량선성 내무청의 대표자



Hoang Thi Hien

Hoang Thi Hien

청장